

# 2018년 가금밀집지역 축산개편사업

## I. 사업개요

### 1. 목적

- 가금 밀집 및 방역취약 지역에 축사를 안전지역으로 이전 · 개편하여 가축질병 발생확산을 방지하고 동물복지형 축산을 구현

### 2. 근거법령

-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(농어업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), 축산법 제3조(축산발전시책의 강구)

### 3.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

(단위: 백만원)

구분	합계	국고보조	용자	지방비	자부담
2018년	22,500	9,000	-	9,000	4,500
2019년 이후	미정				

\* '18년 시범사업 후 '20년까지 지역선정 완료를 목표로 추진(2년 사업으로 추진)

## II. 2017년 사업시행 주요내용

### 1. 사업대상자

- 가금 밀집 방역취약 지역\* 내에 축산업 허가를 받았거나 등록을 한 가금농가 법인  
\*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지정된 AI 중점방역관리지구
  - 가금사육업의 사육시설 면적은 50m<sup>2</sup> 초과할 경우 지원

### 2. 지원자격 및 요건

#### 〈선정 우선순위〉

- 오리 농장(부화업, 종축업 등 포함)
- 축사를 건축할 토지 매입 및 건축 인허가를 완료한 경우

### 〈지원 제외〉

- 가금 밀집 · 방역취약 지역①에 해당되지 아니하거나 해당되지 아니할 예정②인 경우
  - ① 가금 축사간 거리 500m 이내 또는 철새도래지 3km 이내
  - ② 인근에 다른 농가가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어 이전하거나 폐업할 계획 등의 경우
- 기업농 이상인 경우(예: 산란계 기업농은 축사면적 5천㎡ 초과)
  - \* 농가들이 법인을 구성하여 기업농(산란계는 2만㎡ 이하) 규모일 경우에는 지원 가능

### 3. 지원자금의 사용용도

- 가금농가가 방역취약지역에서 안전지역으로 축사를 이전하거나, 농가들이 모여 법인을 구성하고 축사를 개편하는데 소요되는 비용
  - 이전 지역 또는 현 위치에서 가금 외 축종으로 변경 가능
  - 가금 밀집 · 취약지역 밖의 타 축사를 매입하여 이전하는 경우 신축 · 개보수 가능(매입비 미지원)
- 축사, 축사시설, 축산시설, 방역시설의 신축과 개보수, 신규 구비 및 교체에 지원
  - 건축비에는 설계비, 감리비, 철거비 등 포함
- 축사 : 가금 사육 공간으로 사용되는 건축물로써, 건축물 완성을 위해 필요한 기초공사, 골조, 축벽, 지붕 등에 지원 가능
  - 완전 건축물 축사에 대해 지원하고, 가설건축물 축사는 지원에서 제외
- 축사시설 : 가축 사육을 위해 축사 내부에 설치되어야 하는 시설로서 가축사육 목적을 위해 축사 건축물에 부속되어 설치된 시설
  - 축사 내에 부속되어 설치되는 시설로써 급이시설, 급수시설, 전기시설, 환기 시설, 조명 시설, 발열 시설, 소방 시설 등
    - \* 발육기, 발생기, 이란기, 콘트롤기, 세척기, 부화중지란 처리기
- 축산시설 : 축사 및 축사시설과 별도로 가축사육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부수되는 농장 내 시설
  - \* 계란·종란 보관창고, 집란기, 계란세척기 및 선별기, 부적합란 처리기기, 포장기
- 방역시설 : 울타리(또는 담장), 농장출입문, 차량 세척 · 소독 시설 · 장비, 대인소독시설 · 장비, 방역실, 축사전실, 차단방역을 위해 필요한 사료반입시설, 출입통제시설(CCTV 등), 울타리 등 방역을 위해 구비해야 하는 제 시설
  - 축산물품 보관시설 : 깔짚저장고, 물품저장고, 사무실 등
    - \* 농장 내 가옥 등 생산과 무관한 시설에는 지원불가
- 분뇨처리시설 : 축사를 신축(재축)하는 농가로서 축사와 분뇨처리시설을 통합하여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 지원 가능

\* 분뇨처리시설 설치만을 지원하거나 스키드로더, 수거·운반·살포장비 등 이동형 장비를 지원하는 것은 불가(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과 지원 중복 방지)

- 기타시설 : 출하분류기, 폐사축 처리시설, 악취저감시설(악취를 포집하거나, 미생물·훈증·미량화학물질 활용 등을 통해 악취를 소거하는 고정시설), 사료배합기 등 기타 가축생산·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과 생산에 직접 이용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신재생 에너지 발전 시설 등
  - \* 축사환경 개선 및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지원 여부판단
- 이 사업에 미기재된 사항이라도 축사시설 현대화 및 생산성 향상이라는 사업 취지에 따라 지원여부를 판단(조경식물 등 경관개선시설은 미지원)

#### 4.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

##### 〈지원형태〉

- 지원조건 : 보조 40%, 지방비 40%, 자부담 20%
  - \* 지방비는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나, 동일 시·도 내에 타 시·군으로 이전시 시·도에서 40%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타 시·도로 이전시 전액 자담으로 집행이 가능
- (농가 분류 기준) 축산업 혀가·등록증에 기재된 축사면적을 기준으로 지원 여부를 판단
  - 각 지자체는 농장주의 시군 내 혀가·등록 면적을 기준으로 하되, 농어업경영체 D/B상 사육두수 자료도 참고하여 판단
- (사업기간) 지역별 2년 지원

##### 〈사업 의무 준수사항〉

- 가금 밀집·방역취약 지역에서 안전지역으로 축사를 이전

구 분	가금 밀집·방역취약 지역	→	안전 지역
① 가금 축사간 거리	500m 이내	⇒	500m 초과
② 철새도래지	3km 이내	⇒	3km 초과

\* 지원 농가는 방역취약 지역 ① 또는 ②중 하나에 해당되어야 함

\*\* 이전하는 지역은 안전 지역 ①~②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함

\*\*\* 철새도래지는 개경될 축산법에 따른 철새도래지를 말함(지자체 지정 계획)

- 강화된 「축산법」의 축산업 혀가기준 준수 및 동물복지형 축산 시설을 설치

##### 〈동물복지형 축산 기준(안)〉

① EU 가축사육 밀도 : 산란계 0.075㎡/마리, 육계 30~38kg/m<sup>2</sup>

② 본래의 습성을 유지 : 깔짚, 헛대 등 설치

③ 동물복지형 축사 설치 : 평사, 방사, 개방형 케이지 등

- AI방역중점관리지구(가축전염병예방법)에서의 엄격한 방역기준을 준수
  - \* 방역중점관리지구에 따른 엄격한 방역·소독시설을 설치(시행규칙 제3조의5제4항)
    - (축사 진입 전에 방역복을 입는 전실(前室), 차량 세척시설 등)
  - \* 사육시설 1천㎡ 이상의 소독설비 기준을 준수(시행규칙 제20조제1항 및 별표 1의2)
- 기존 축사는 철거(축산법에 따라 축산업을 폐업)
  - \* 기존 축사 부지에서는 축사 건립을 금지
- (목적에 부합하는 사용) 사업 완료 농가는 사후관리 기간 내 지원받은 시설물을 가축사육 등 지원목적에 부합하도록 사용
- 수혜농가는 경영기록부를 작성하여 비치
- 의무 미이행 농가는 적발 시 지원액 일부 또는 전액 환수
  - ※ 지원대상자들이 '18년 사업 추진시 개정될 법령을 준수하도록 개정 완료 전이라도 향후 사업 지침서에 반영할 계획임
  - (향후 법령 개정, 추가 대책 등으로 의무사항이 조정되거나 구체화되면 지원대상자는 이를 준수하여 축사 건축 등을 이행해야 함)

## 5.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

- (농가별 상한액) 축종별 규모별 지원한도 지원범위 내에서 축사 면적당 지원단가를 곱하여 농가별 상한액을 산출
  - 다음 표에 따른 지원형태별 '최대상한액' 초과는 불가
- 사업 상한액 내에서 실비 지원을 원칙으로 함
- 개별농가들이 모여 법인을 설립할 경우, 법인의 지원상한액은 기업농 상한액(축사시설현대화사업 준용)과 농가별 상한액의 합계 중에 낮은 금액으로 함
- (면적기준) 이전할 축사의 면적은 지원대상 면적(상한 면적) 이내에서 지원

### ▶축종별 사업 단가 및 최대 상한액

구분	축사 면적당 사업 단가	보조 사업	
		지원 대상 면적	사업 최대 상한액
양계	육계(토종닭 포함)	450천원/㎡	50㎡초과~5,000㎡이하 2,250백만원
	종계(토종종계 포함)	562.5천원/㎡	8,250㎡이하 4,640백만원
	부화장(토종계 포함)	1,875천원/㎡	900㎡이하(150㎡이하) 1,687백만원(281백만원)
	산란계(산란증추 포함)	900천원/㎡	50㎡초과~5,000㎡이하 4,500백만원
오리	육용오리	450천원/㎡	50㎡초과~7,000㎡이하 3,150백만원
	종오리	562.5천원/㎡	4,995㎡ 이하 2,810백만원
	오리 부화장	1,875천원/㎡	300㎡ 이하 562백만원
매추리		50㎡초과~3,000㎡이하	2,700백만원

①금액은 지원액이 아닌 총 사업비(보조+지방비+자담 등) 기준임

(가금 외에 타 축종은 축사시설현대화사업 기준을 준용)

②거위, 칠면조, 타조, 꿩 등은 오리 기준에 따름